

## 요약문서# 77A: 공정노동기준법(FLSA) 에의한 보복 금지 (FLSA)

이 요약문서는 컴플레인을 제기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근로자에게 대한 보복 금지와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국노동부 임금시간과는 임금 및 작업 시간에 대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연방법, 즉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를 관리 및 시행합니다. 모든 해당 비면제 근로자는 반드시 모든 일한 시간에 대해 적어도 현 연방 최저 임금을받아야 하며 및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모든 시간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1.5배의 초과 수당을 지불 받아야 합니다. 임금시간과는 컴플레인 기준 및 자체 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FLSA 위반을 조사합니다.

### 금지사항

FLSA의 섹션 15(a)(3)에서는 "컴플레인을 제기하거나 이법에의한 또는 관련된 모든 절차를 시작하거나 시작을 유발, 절차에서 증언을 하였거나, 하려 하거나, 산업 위원회에서 일원으로 역할하였거나 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해 해고 또는 어떠한 차별을 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접수한 컴플레인에 대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임금시간과에 접수하신 컴플레인은 보호를 받으며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고용주에게 접수한 내부 컴플레인도 보호할 것으로 명령합니다.

### 적용범위

섹션 15(a)(3)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그 어떤 사람도"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FLSA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의 작업 및 고용주에 대해서도 모든 고용주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FLSA 적용범위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http://www.dol.gov/whd/regs/compliance/whdfs14.htm>의 자료표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섹션 15(a)(3)에서는 당사자 간 현재의 고용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이전 고용주에 의한 보복으로부터도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 시행

컴플레인을 제기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 “해고 또는 어떠한 차별을 당한 근로자”는 임금시간과에 보복 컴플레인을 제기하거나 적절한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 개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해결책은 고용, 복직, 임금 상실 및 다른 손해배상액을 포함하지만 그에 제한되지 않는다..

추가 정보를 원하신다면,

추가 정보를 원하신다면 임금시간과 홈페이지(<http://www.wagehour.dol.gov>)를 방문하시거나 무료 정보 및 헬프라인 1-866-4USWAGE (1-866-487-9243)으로 귀하의 타임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규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의 문서가 될수 없습니다.

**U.S. 노동국**

Frances Perkins Building  
200 Constitution Avenue, NW  
Washington, DC 20210

**1-866-4-USWAGE**  
TTY: 1-866-487-9243

[연락처](#)